

2 · 0 · 2 ·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한국어학급(초중등)

2 · 0 · 2 ·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한국어학급(초·중등)



C o n t e n t s

I.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개요	4
II.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개요	5
III. 운영 방침	7
IV. 학사운영	11
V. 교육과정 운영	13
VI. 참고자료 목록	17
부록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도움사례	25

본 자료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담당교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참고자료 및 현장의 다양한 운영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되, 학교(유치원)의 여건과 다문화학생(유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개요



1. 목적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모델 마련
- 현장의 **다문화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언어발달·한국어교육 등 **다문화학생(유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공

2. 추진 방향

- 가족, 종교, 문화, 성, 장애,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배경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이주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 배제하는 행동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
- 각 지역 특성과 학교(유치원) 여건에 따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과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다문화교육** 추진
- 시·도교육청은 컨설팅 및 예산 등을 제공하여 효과적 운영 지원

3.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

유형	운영 내용
유치원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운영
초·중등	일반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반영하고,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지속성 있게 다문화교육 실시
한국어학급 (유·초·중등)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기존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학교를 '19년부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통합

[참고]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출처〉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1.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유아) 등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필요성)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이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전체학생 대비 2.5%)
※ 다문화학생 수(전체대비 비율) : ('15)82,536명(1.35%) → ('20)147,378명(2.75%)
– 공교육에 진입하여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언어 장벽으로 학습·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교육* 제공
*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한국어학급 주요변화〉

- 다문화 예비학교 도입 및 확대('12년~)
- 「한국어 교육과정」도입 및 예비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12년~)
-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보급('13년~)
- '찾아가는 예비학교*' 도입 및 확대 운영('16년~)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예비학교 미운영교에 편·입학 시 한국어강사 등 지원
- 「한국어 교육과정」개정고시('17.9.29)
* '19.3.1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도움자료 개발·보급('18년)
- '예비학교' → 「한국어학급」으로 정책용어 변경('19.2월)
- '표준 한국어' 교재 개정판 개발·보급(~'19.2월)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보급(~'19.9월)
- '표준 한국어' 교재 개정판 익힘책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21.1월)

2. 운영 목표

- 모든문화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어학급에서 공교육을 통한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 중도입국·외국인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조기 적응 지원

3. 선정 기준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재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 또는 공모
 - 시·도교육청 자체 한국어학급 선정(심사) 기준을 반드시 수립
 - 현황 파악을 통해 신규 편·입학하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우선 지정

〈선정예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 재학교 파악 → 해당 학교의 장과의 협의 하에 한국어학급 우선 지정 → 이후 신청학교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 정기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필요시 변경 지정(재지정 및 취소)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
 - ※ 한국어학급 참여 학생이 적은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예산으로 일부 활용 가능

4. 한국어학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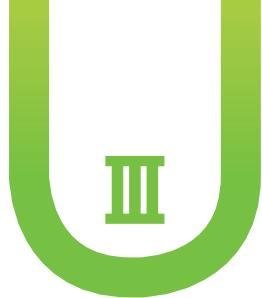
- (개념)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
- (유형) 시·도교육청이 지정·공모하여 운영
 - 직영형은 일반학교 안에 상시적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탁형은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구분	직영형	위탁형
교과운영	복합(일반교과+한국어, 한국문화)	
학적생성	한국어학급(일반학급)	한국어학급(원적교)
학력인정	인정	인정

※ (센터형) 학력인정 기관은 아니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인정받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5. 운영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III

운영 방침



1.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한국어학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그에 준하는 학내 위원회) 구성 · 운영
 - ※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와 같은 효력을 가짐
- 학부모 대표, 교사 등 최소 3인~최대 5인으로 구성
- 별도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결정으로 이미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대체 운영 가능
- (역할) 학생배치, 원적학급 복귀, 개별화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등 **한국어학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 의결

2. 한국어학급 운영

- (대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

한국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 출신 부 또는 모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에 영향을 받은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을 거쳐 입국한 학생, 또는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01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 내용 발췌〉

- 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난민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학교 적응이 어려운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 가능
 - ※ 대상자 선정 시 취학대상 연령(만 7세~17세) 아동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으로 안내
- (배치)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수가 입급 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
 - ※ 단, 일시적인 인원 증가 등 예외적 상황인 경우 탄력적으로 학급인원 조정 가능
- (교육기간) 6개월 ~ 4학기 이내
 - 직영형은 최대 4학기, 위탁형은 1년 이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

위탁형 한국어학급 교육기간

- (초등) 학기도중에 위탁된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학기가 끝나고 원적학교로 복귀함
- (중등) 학기도중에 위탁된 경우, 그 다음 학기부터 위탁기간으로 산정함
- (공통) 위탁기간 내 원적학교로 복귀가 가능한 학생은 상시 복귀 가능
- 원적학교 학교장의 요청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며, 재위탁은 학생당 1회에 한함.
재위탁 기간은 당초 위탁기간(1년 이내)과 동일함

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한국어학급 미운영교에 편 · 입학한 중도입국 · 외국인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시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형태〉

- 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중도입국 · 외국인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국어강사를 파견하는 형태
- ② 지역의 일부 한국어학급을 거점학교로 활용하여 한국어강사가 방문순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 ③ 중도입국 · 외국인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 (행 · 재정지원) 파견 인력에 대한 인간비는 해당 한국어학급에서 부담하며, 전일제 고용인력일 경우는 출장 처리하고 시간제 고용 인력일 경우는 강사료를 지급

4. 환경 구성

- 중도입국 · 외국인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 친화적이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별도의 한국어학급 공간을 확보하고, 한국어학급에 필요한 교구, 학습자료 등을 비치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한국어학급 운영교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원격 및 집합 연수 실시**

* (연수시간) 다문화학생(유아) 담임교사 15시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30시간 내외 권장
(연수주기) 시 · 도교육청별 상이

5. 교원 운용방안

- 한국어학급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적절한 교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자격) 담임교사 및 일반교과 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안 교과 및 한국어강사는 관련업무 경력자 선발

- 담임교사(겸직 및 신규채용), 교과담당교사(겸직 및 시간제 강사 채용)
 - 교원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우선
 - 관련업무 경력자 우선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지도교사 및 한국어 강사(시간제 강사 채용)
 - 관련학과 전공자 우선
 - 관련업무 경력자 우선
 - 다문화언어강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자 우선

- 한국어학급 전담교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

– 정규학교(초 · 중 · 고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경우 학급당 정규 교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 한국어학급 설치 · 운영을 위해 시 · 도교육청의 교원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한국어학급 전담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당 전담교원에 대한 가점 부여 권장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직영형

- (담임교사) 한국어학급 지정교 교원 중 겸임(한국어학급 담임교사 임명) 또는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증원 배치(전담교사) 가능

※ 교육경력이 충분하며, 다문화학생 또는 한국어교육 이해도가 높은 자로 지정 · 선발

- (강사) 교원 외에 필요 시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령기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적임자 선발

* 한국어강사(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다문화언어 강사(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등

위탁형

- (담임교사) 별도학급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위탁교 교원 중 겸임하고, 별도학급이 구성되면 신규채용 및 위탁교 교원 중 전담

- (교과담당교사) 대안교과(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등)교사와 보통교과 교사로 구분

※ 교원 운용현황에 적절하게 시간제 강사와 위탁교 교원의 겸임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

6. 예산 활용

- 한국어학급 목적에 적합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 필요
 - ※ 구체적인 예산 활용은 해당 시 · 도교육청 예산 운용 지침을 원칙으로 함
 - 현장체험, 물품 구입(의상, 요리활동 재료비 등)에 집중되어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유의**
 - 해외 연수 등 **부적절한 목적의 예산 사용 불가**
- 학생 급식비 등 **복지적 차원의 지원, 자산 취득**(준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구입 등) 및 **시설구축**(교실 리모델링 등)은 시 · 도교육청 자체 예산 활용
- 원적학급 완전 복귀 학생(6개월 이내)은 **한국어학급 운영비의 10%이내에서 기초학력 신장 지원**



학사 운영



1. 입급 및 원적학급(교) 복귀 기준

- (입급기준)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의 이주 배경 유형(국내출생, 중도입국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
※ 학생의 연령, 보호자의 교육 희망여부, 학교 내 부적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결정
- (입급 · 복귀 시기) 학생의 **한국어학급 입급과 원적학급 복귀는 상시로 하되, 학기 중에 입급한 경우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다음 학기부터 교육기간으로 산정**
- (입급 · 복귀 결정) 학생의 **한국어학급 입급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하며, 원적학급(교) 복귀는 한국어학급 담임(전담)교사의 의견과 학교의 장 또는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위탁형 학교의 학생 위탁여부는 원적학교 학교의 장이, 원적학교 복귀는 원적학교 학교의 장과 위탁학교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복귀 최종 결정 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이때, 학생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어(KSL)교육과정 진단도구** 및 성취도 측정도구,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https://ko-ls.or.kr>) 또는 **한국어학급의 자체평가**(교사의 판단포함)로 한국어학급 입급 및 원적학급(교) 복귀의 기준 자료로 활용 가능
※ 진단도구와 성취도 측정도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원적학급(교) 복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진단 및 성취도 측정 도구

- (**한국어(KSL)교육과정 진단도구**)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 구분 점수는 학교급 구분 없이 모두 40%와 70%를 기준으로 함
단, 종합 등급의 경우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급으로 판단함
- (**한국어 성취도 측정도구**)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포함하여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80점(성취도 판정 점수)이 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원적학급(교)으로 복귀시켜도 됨
※ 한국어 교육과정 진단도구 및 성취도 측정도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02-3780-9783~6)를 통해 제공받아 사용 가능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초·중·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을 통해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19) 초등 3~6학년 → ('20) 중·고등학교('20.3월) → ('21) 초등 1~2학년 확대 운영
 -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방법 관련 문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4-0079)
 - 진단문항 및 보정학습자료 관련 문의 :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042-821-8586)

2. 학적 관리

- 한국어학급 학생은 기본적으로 원적학급 정원으로 관리
- 한국어학급 학생은 위탁생으로 관리하며, 출결자료, 성적, 각종 비교과 영역은 그대로 인정

〈참고자료〉

- 2020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20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1, 교육부)

직영형

- (담당자) 한국어학급 학생의 출석과 생활기록부 관리는 한국어학급 담임(전담)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적생성 및 학적과 관련된 NEIS 업무는 학적업무 담당교사가 입력
- (출결관리) 다문화학생은 가정환경 특성상 출결상황이 다변적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한 철저한 관리 필요
- (누가기록) 학생 카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공유하고, 학부모 통지 자료로도 활용 가능

위탁형

- (담당자) 위탁기관 학생의 학적과 관련된 NEIS업무는 학적 업무담당 교사가 입력하며, 학적과 관련한 그 외의 사항은 원적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름. 또한 위탁 한국어학급에서 전달되는 위탁생에 대한 모든 자료(출결,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자료, 성적자료 등)는 당해 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입력 처리

※ 출결관리 및 누가기록은 직영형 한국어학급과 동일하게 운영



교육과정 운영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의거 한국어학급 교육 과정은 다문화학생 중 한국어교육과 한국생활 적응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2항에 의거 한국어학급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거 한국어 학급은 다문화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과정)에 의거 한국어학급 중 위탁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교과)에서 정하고 있는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교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에 의거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함

2.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 (개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 행위와 과정

〈한국어 교육과정 세부목표〉

- 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능력 함양
- ② 모든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능력 함양
- ③ 학교의 교과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돋는, 교과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함양
- ④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 함양
- ⑤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 함양

- (내용체계) 생활 한국어 교육과 학습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초급(1~2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 중급(3~4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 와 함께 '학습도구 한국어'를 병행 교육하며, 고급(5~6단계)에서는 '교과 적응 한국어'를 집중 교육

구분	생활 한국어 교육		학습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 재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소통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 및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3. 교육과정 운영 방법

직영형

-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한국어학급은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원적학급(교)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

다문화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 ·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종론 해설(초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중학교) 종론 발췌〉

- (개별화교육) 통합교과로 지정한 교과를 제외한 교과 중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그에 준하는 학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으로 대체 편성 · 운영
- (통합교육) 한국어 능력 및 수학 능력과는 무관하게 원적이 생성된 일반학급에서 수강이 가능한 교과목을 통합교과(예체능과목 : 음악, 미술, 체육 등)로 지정하여 해당 교과목은 원적학급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교과와 대체교과의 비율은 학생의 한국어학급 입급 기준으로 매 학기마다 통합교과의 비율을 높여주어야 함

※ 단, 한국어 습득이 현저히 늦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통합교과의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학생은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그에 준하는 학내위원회)'의 결정으로 통합교과와 대체교과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음

위탁형

- 관할 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 관할 교육청에 별도의 운영지침이 없는 경우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 **(수업일수) 한국어학급**의 수업일수는 **학기당 90일 내외로 하며, 학기당 70일의 범위**에서 **한국어학급**의 위탁교육 실시
 - 학기당 10~20일 이상은 원적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한국어학급과 원적학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교과편성)** 학년 초에 제출하는 「**한국어학급 운영계획서**」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보통교과의 교과목은 **한국어학급** 관할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또는 「**위탁형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안교과)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를 편성하여야 함
 - 위탁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인성 및 진로교육 등을 위한 대안교육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한국어학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해당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음

4. 교과 평가

직영형

- **한국어학급** 학생의 성적입력은 **원적학급의 담임교사(초등)** 또는 **교과담당교사(중등)**가 담당
-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교과(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련 등)는 **한국어학급 담당교사의 자료**를 전달받아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NEIS**에 입력
 - (초등) **한국어학급**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
 -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원적학급의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에 응시하여야 함

공통교육과정

- 중학교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됨. 따라서, 공통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상급 학교로 진학이 가능함
- 중학교 한국어학급에서는 통합교과를 제외한 교과는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교과 평가는 원적학급(교)에서 동일하게 받아야 함
- 통합교과를 제외한 교과를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하더라도 원적학급(교)의 평가를 받아야 함

※ 필요에 따라 한국어학급 학생이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으로 인해 수업을 듣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보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중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 또는 한국어학급만의 '개별화 교육과정(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식
 - (1안) 한국어학급 학생이 실제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원적학급의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 참여
 - (2안) 한국어학급만의 '개별화 교육과정(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및 평가

고등학교 개별화 교육과정 평가 방법

- (1안) 교과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을 입력하나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는 석차등급을 방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2안) 교양교과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으며, 'P'로만 처리함

※ 단, 개별화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은 한국어학급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선택과 관련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 고지해야 하며, '동의와 선택'에 따라 지도해야 함

위탁형

- **(담당) 위탁학생**에 대한 자료를 받아 원적학교 담임교사가 NEIS에 기록
- **(방법)** 한국어학급 교과평가는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에 따름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

5. 원적학급(교) 복귀 후 교육지원

- 원적학급(교) 학교의 장은 한국어학급 교육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다문화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함
- 통합교육 실시 후의 학교 적응 상황 모니터링을 최소 6개월 이상 실시하며, 멘토링 또는 방과후 수업 등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함
- 한국어학급 학교의 장(위탁기관의 장 포함) 및 교원은 해당 학생이 한국어학급을 마치고 원적학급(교)으로 복귀한 후에 학생적응 및 지도를 위하여 적극 협조함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 ②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① 삭제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 · 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 ·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 · 복지 ·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 · 상담 · 치유 ·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 · 진단 · 지도 · 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 공립 ·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 ·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설립인가)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 <2017. 1. 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 12. 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교과용 도서)

-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참고자료 목록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출처
한국어학급 운영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다문화학생의 생활 및 학습 지도 안내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중도입국·외국국적 학생의 취학·(편)입학 절차 및 학적관리 요령을 담은 매뉴얼	
한국어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안내	교육부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https://ko-ls.or.kr)	다문화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능력 진단·성취도검사·보정 시스템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전자책)	초등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및 중학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어휘 습득 보조교재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한국어 교육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표준 한국어 교재 기반 한국어교육 영상 콘텐츠 (※ 링크주소는 [다문화교육포털] 내 '교원소통공간'에서 확인 가능)	
	표준 한국어 (초등 11종, 중등 6종)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초·중·고등학생용 교재	국립국어원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출처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재 워크북 · 교사용 매뉴얼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워크북 (놀이자료 및 학습지 등), 교사용 매뉴얼(목표, 학습지도안 등)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한국문화 디딤돌	종도입국 ·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문화 학습지도안	
진로·진학 및 상담	교사를 위한 다문화학부모 상담 길라잡이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절차 및 상담 기법, 상담 사례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상담 보조교재	다문화학생 진로 특성 · 정보, 진로교육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전문상담 현황 및 사례분석 연구	다문화학생 상담 현황 및 상담 절차, 상담 관련 양식 및 측정도구	
	드림레터 (www.parents.go.kr/)	학부모 대상 자녀진로지도 정보 제공 진로소식지 ※ 진로지도 방법, 진로교육 정보, 자녀 진로상담 사례 등을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번역 제공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 지원센터
기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안내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작품집	2012~2020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학교 입학절차,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13개 언어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진입 및 교육지원 안내	(*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다국어 가정통신문	학교급별(유·초·중) 총 51개 주제의 가정통신문 표준안 ※ 6개 언어* (*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재(전자책)	부모 나라의 모국어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이중언어학습 교재 ※ 9개 언어* (*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러/캄/태/ 몽/인)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중/베/ 일/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참고자료는 다문화교육포털(edu4mc.or.kr)에서 확인 가능

부록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도움사례



①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1

다중언어로 한국어학급 입급식을 개최하기

한국어학급에 입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급식을 개최합니다. 입급 선서는 러시아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각 1명을 대표로 하고, 한국어학급 및 재학생 소개를 통해 입급의 기쁨을 주고 한국어학급 생활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갖도록 합니다.

사례2

수준별 한국어교육하기

한국어학급에서 학생들의 시간표를 계획할 때, 한국어능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은 오전에는 한국어교육, 오후에는 원적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시간표를 설계합니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3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누고, 한국어능력이 비슷한 학생을 2~4명으로 소그룹을 지어 지도합니다. 혹시 그룹화된 교육과정 내에서도 한국어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방과후 보충학습을 통해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한국어교육

사례1

취학 초기 적응 한국어교육 실시하기

한글 및 한국어지도가 시작되기 전에도 학교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표현들은 반복 연습을 통해 익혀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특히 건강·위생(못 먹어요, 아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등), 안전(위험해, 안돼 등), 관계형성(미안해, 고마워, 도와줘), 학교생활(무슨 수업시간이야?, 과학실로 가자, 뛰지마 등) 등의 장면을 제시하고 알맞은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2

외국어 사전 또는 번역 어플리케이션 활용하기

한국어–베트남어, 한국어–일본어 등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어학급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며 관련 어휘를 찾아볼 수 있어 어휘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능력이 아주 초급인 경우에는 ‘파파고’ 등의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글자를 잘 모르더라도 듣고 따라서 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3

과제를 부여하고, 복습노트 만들기

개인별 보충 학습지를 부여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과제를 통해 학습하게끔 합니다. 학습지 수행을 완전히 개별학습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미비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충학습 또는 방과후과정시 학생을 담당하는 보조강사(대학생 멘토, 다문화언어강사 등)의 협조를 받아서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4

‘말하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한국어학급 수업 시작 전 ‘재잘재잘 이야기’ 시간을 마련하여,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날의 감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대화를 통해 어휘력도 향상되고, 학생 스스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다보면 의사소통에 자신이 생깁니다.

사례5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책을 활용하기

동화책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간단한 읽기 내용으로 재구성합니다. 학습하게 될 문법요소와 주어진 글감을 토대로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6

한국어 인증제 ‘내가 단어왕’이에요~

표준한국어(기본 교재)에서 제시한 기본 한국어를 이중언어로 번역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매월 마지막 주 단어 테스트를 실시하여 통과한 학생에게는 보상을 합니다. 한국어 단어왕 프로그램을 하며 다문화언어강사와 한국어강사가 협력하여 어휘집을 마련하고, 단어왕이 된 학생에게는 뱃지와 선물을 수여함으로써 단어 학습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사례7

한국어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기

한국어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어 자모 지도를 합니다. 부르기 쉬운 음정으로 악보를 만들어 한국어학급 게시판에 붙여 수업이 끝날 때 마다 반복적으로 부르도록 하여 한국어 자모를 배우도록 합니다. 노래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보다 흥미롭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고 노래 가사를 반복함으로써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들이 엮어내는 문체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례8

퀴즈로 배우는 맞춤법 공부하기

발음, 숙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속담 등 다양한 콘텐츠 선택이 가능한 ‘한글의 달인 앱’을 활용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 학습 흥미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게임의 승패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9

녹음기를 통해 발음을 교정하기

녹음기에 자신이 하는 말을 녹음하고 듣다보면 언어의 정확성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 학습과 교정 학습의 효과가 뛰어나고, 교사가 발음하고 따라해 보라고 할 때는 교정이 안되는 발음도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직접 들어보면 빠르게 교정이 됩니다.

사례10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기

학령기 학습자를 위한 여러 가지 한국어교육용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예: 깨비퀴즈, 한글이 야호, 두리안(한국어 배움터), 한글알깨기, 多같이 smart하게 ㅎ걸음)을 활용하여 흥미롭고도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멀티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학습자가 특별히 어려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 회 반복하여 완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사례11

자유학기제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설하기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 1학년에 입급하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한국어교육 교재 활용

사례1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 찾기

한국어교육은 표준한국어를 주 교재로 하여 학습 능력에 따라 교재를 활용합니다. 저학년 학생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재(예: 찬찬한글, 읽기자신감, 기적의 한글 학습 등)를 통해 읽기와 쓰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한국어능력에 맞게 교재를 사용합니다.

사례2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구분하여 지도하기

생활 한국어는 애니메이션, 영화, TV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사용합니다. 학습 한국어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친숙한 문학작품(전래동화)을 활용하는 것으로 접근(예: 콩쥐팥쥐, 흥부놀부 등)하여 다양한 글의 종류(시, 수필, 기사 등)를 접하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 ‘읽고 이해하기’, ‘생각해서 쓰기’ 등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사례3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어교육 받기

‘세이펜’의 단계별 독서지도, ‘온라인 코스넷’의 자기주도학습, ‘SNU LEI’를 활용한 자기평가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어교육을 받습니다.

④ 한국어능력 진단 및 성취도 평가

사례1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하기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초·중·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을 통해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편·입학과 동시에 시스템 등록을 통해 상시로 한국어능력을 진단하고, 성취도검사 및 보정학습이 반복 진행되며, 4단계 도달 시 원적학급 복귀와 동시에 척도검사(온/오프라인)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의 판단 하에 4단계 수준 미달인 경우에도 원적학급 복귀 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609-7070), 진단문항 및 보정학습자료 관련 문의는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042-821-8586)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례2

한국어능력, 학교생활의 적응도 등을 고려한 완전 복급 준비하기

원적학급으로 완전 복급을 위한 적응기 지도 시에는 통합교육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방과후 시간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합니다. 적응기 지도까지 완료가 되면, 한국어능력 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교생활의 적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전 복급을 결정합니다. 이때에는 평가 결과 외에도 해당 학생 지도에 참여한 원적학급,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각종 보조강사, 관리자 등의 의견을 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3

표준 진단도구 또는 자체 제작 평가지를 활용하기

학생이 저학년이거나 기타 요인으로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평가지를 활용합니다. 표준한국어에 나오는 확인문제, 숙제 등으로 출제했던 문제 등을 추출 또는 재구성하여 만든 평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1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인사 배우기

아침 등교 및 하교 인사(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급식 인사(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등 기타 학교생활 속에서의 인사를 꾸준히 하여 예절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례2

사이버서당 체험으로 예절 배우기

청학동 서당 운영 훈장님을 화상을 통해 만나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과 생활 예절을 배워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고, 한국어학급 친구들과 예절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례3

재능기부로 다양한 체험활동 하기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생활 문화를 익힙니다. 특히, 한지공예로 엽서 만들기, 서예 캘리그라피, 전통 매듭 만들기 등은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평소 관련분야에 재능을 가진 교사들이 1인 1교육 재능기부로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정서 및 학교적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례4

안전과 규칙을 놀이 활동으로 이해하기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서, 예절, 규칙 등을 놀이 활동과 미디어교육 자료, 도서를 활용합니다. 나를 사랑해요(자기소개, 친구 익히기,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나의 미래 이야기하기), 소중한 나의 몸(깨끗한 몸가짐과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단정한 옷차림) 등의 주제로 예절, 진로, 안전,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사례5

‘유튜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생활교육 하기

유튜브의 비디오 자료를 보고 기본 생활 방법을 익힙니다. 젓가락질하기, 연필잡기, 공수인사, 안전교육 등 사진자료보다 훨씬 실제적이며, 반복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사례6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로 지역사회 안내 하기

구글 어스를 통해 한국어학급 학생이 온 나라를 소개합니다. 스트리트 뷰로 생생하게 보이는 고향의 모습이 신기하여 학생들은 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아는 곳을 한국어학급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언어 구사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7

나만의 카드, 달력을 만들기

나만의 개성 있는 달력을 만들어 날짜와 요일 표현법을 복습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유용한 달력을 만들어 또래 멘토링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연말연시를 맞아 연하장을 만들고 부모님께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례8

‘학교지도 그리기’ 활동하기

학교의 여러 시설(교무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음악실, 보건실) 등을 돌아보고 기능을 이해한 후 나만의 학교지도 그리기 활동을 합니다. 학교를 관심 있게 둘러보고 필요에 따라 시설을 활용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시설의 편리한 점, 안좋은 점을 기재하고(예: 보건실_ 침대에 누울 수 있다 / 소독약 냄새가 난다) 소개하는 언어활동으로 계획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9

지역사회 탐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역 도서관 대출카드 만들고 이용하기, 식당·문구점 이용하기 등 해당 연령기 생활에 밀접한 시설 이용방법을 습득하는 내용을 우선순위로 구성하고 실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매주 1회 오후 시간 활용, 월 1회 전일 운영) 이외에도 동사무소, 은행, 시장 등 주요 지역사회 시설들을 추가로 탐방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장면에 맞는 언어표현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1**방과후 학습으로 기본기 다지기**

원적학급 담당 교사(또는 교과교사)와 협업하여 교과 수업 및 수행평가를 위한 보충지도를 실시합니다. 교과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중요한 내용을 되짚어 주면서 학습 수준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원적학급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으로의 완전 복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2**교육 콘텐츠 활용하기**

방과후 EBS 교육 콘텐츠(초등 글쓰기 책방글방, 꼼꼼 초등 국어 문법, EBS 만점왕 등)를 이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자형태가 아닌 멀티미디어(컴퓨터, 태블릿 PC 등)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 교과수업의 공백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사례3**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보충과정 운영하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으로 결손된 교과(국어, 사회, 역사, 과학 등)에 대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수업 보충을 합니다. 학년 별로 학생들은 모아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한국어강사와 협업(co-teaching)하여 직접 주말과 방학동안 교과 수업 및 수행평가를 위한 보충 지도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4**교육복지사업 · 두드림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학력 신장을 위해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도란도란 교실'을 운영합니다. 두드림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영어·수학)을 운영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합니다.

사례5**학습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기**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당학교의 영어교사는 영어, 중국어교사는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사회 및 국어 튜터링을 운영합니다. 모어사전을 활용하여 교과별 학습 주제 및 주요 개념 등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는 원적학급에서 능동적인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사례6**대학생 또는 고등학생 재능기부를 통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복금 전 적응기 교육 시 학습한국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매칭하여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중에는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되, 주말에는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아리 연계를 통해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준이 비슷한 다문화학생을 소그룹화 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또래를 보며 롤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적응력 강화

① 통합교육

사례1

원적학급 친구들과 친밀감 형성하기

‘어깨동무 친구맺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가정환경을 이해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란도란 어울림 마당’을 통해 원적학급 친구들을 한국어학급에 모두 초대하여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한국어학급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사례2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회 실시

주 1회 정기적인 협의회 시간을 마련하여 원적학급 담임교사에게 한국어학급의 수업 방법 및 해당 학생들의 한국어능력 정도를 안내합니다.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 또는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당 학생의 적응 상황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례3

강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하기

한국어학급 학생의 강점 개발을 위하여 한국어의 어려움은 있지만 한국어학급 외의 스포츠, 과학 등 관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시킵니다.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발명 및 토론 수업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잊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축구, 야구 등 교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강점과 진로에 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원적학급 복귀 후 지원

사례1

교과학습의 적응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원적학급으로 완전 복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합니다. 아동용 컴퓨터 및 프로벌 한글읽기 프로그램 구비, 7개국 한국어(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전래동화 및 세이펜 등을 구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지도합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복급학생 상담과 복급한 학생이 다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복급 학생의 교과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례2

복급학생의 알림장 살펴보기

복급학생의 알림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다문화언어강사 등과 상의하여 수시로 확인합니다.

사례3

원적학급 적응 관찰지 작성하기

원적학급에 복귀 후 해당학생의 전반적인 적응(학업, 교우관계, 의사소통 등)에 대한 관찰지를 작성하여 학생에게 어떤 부분의 지원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고, 수시 관찰 및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합니다. .

③ 학교생활 지도

사례1

초기 입급한 한국어학급 학생을 위한 ‘Hello school’ 운영하기

한국어학급에 초기 입급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학급 안내, 학교 공간(강당, 과학실, 도서관 등) 등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10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안내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 또는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지원, 학교에 먼저 입학한 동일 출신국의 학생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사례2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 안전교육 실시하기

한국어학급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재난 대피 방송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언어강사와 협업하여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사례3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교 및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기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이 많아 안전하게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일 저녁시간, 주말, 방학기간 동안 1:1로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 안정 및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은 학습(영어, 수학, 한국어 학습 지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학년은 돌봄 형태(생활 적응, 상담 및 친교 활동 등)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4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건강 관리하기

다문화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안과검진을 통한 안경 맞추기, 충치치료 및 예방접종, 기타 건강관리생활을 지원합니다. 복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도 되고 한국어학급 예산으로 관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5

세계 여러 나라 음식 제공하기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고, 모든 학생이 어울려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을 지원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학생들에게는 돼지고기 및 일부 음식들이 급식으로 나가게 될 경우 달걀 및 콩류 등의 식품으로 대체하여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슬람문화권 학부모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나라와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영양교사와 협의하여 월 1회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합니다. 학교 내 재학하는 학생의 출신국 음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6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하기

3~4월에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생활 적응 및 학교적응력 강화를 위해 가정연계 교육 방안을 모색합니다. 파악된 상황을 개선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례7

입학 후 조기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기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조기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1~2개월 동안 이중언어강사가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돋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8

수시 상담으로 다문화학생의 안정적인 적응 돋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나 또래 친구들과의 충돌이 잦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역사, 학부모, Wee클래스 상담사, 원적학급 담임교사, 한국어학급 전담교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시 상담과 가정 연계 협력 교육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내 전문 상담 자원을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

④ 학부모 연수 및 상담

사례1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

한국어학급 또는 학사일정과 관련된 가정통신문, 알림사항 등을 번역하여 학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안내합니다. 안내할 때에는 한국어능력이 낮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거나, 번역을 하여 병기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번역은 지역 인근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먼저 정착하여 비교적 한국어능력이 있는 언어권의 다문화가정 학부모 매칭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2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

다문화학생의 부모님은 맞벌이가 많은 관계로 학부모 상담 및 가족 활동 등은 주말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내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학생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 담당교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례3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하기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로 구성하여, 한국어공부와 캘리그라피를 접목시킨 문화체험 활동을 합니다. 가정통신문 및 기타 알림 등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설명해주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례4

학부모님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기

한국어학급 부모님과 함께 밴드를 구성하여 학교생활, 한국생활 시 유의점, 학생들의 일상 등 이모저모를 함께 공유합니다.

사례5

한국어학급 입급 학부모 협의회 개최하기

한국어학급 학부모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교육제도 및 학교 생활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모국어 번역은 인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에게 요청하거나,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우리아이 학교보내기〉자료를 활용합니다. 학부모 협의회를 통해 학생의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고, 중도포기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학교 및 한국어학급 특색 사업

① 다문화 인식 개선

사례1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하기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러 문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주간을 운영합니다. 다문화이해교육을 주제로 친구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기,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학생의 이해의 시간 등을 가집니다. 다문화교육주간 운영을 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등의 응답내용을 확인하는 사후검사를 실시합니다.

사례2

내 친구의 나라를 함께 알아보기

분기별 1회(학기별 2회) 3~6학년 학생 중 희망자(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가 팀을 이루어 친구 나라의 생활 및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탐구보고서를 친구들과 함께 작성하고, 발표회 및 전시를 통해 다양한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례3

부모님 나라에 자긍심 갖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들이 부모님 나라에 자긍심을 갖도록 부모님 나라 삼행시 짓기, 부모님 나라 자랑거리 소개 글짓기 대회, 부모님 나라 요리 소개하기,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사례4

세계시민교육주간 운영하기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 '다문화 공감 토크콘서트', '다문화 학예활동', '다문화 소식지 발행', '세계시민 도전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례5

Global leader day를 운영하기

다문화 공익 광고 만들기, 세계 여행 계획 세워보기 등 학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재능기부를 통해 일일교사가 되어 간단한 문화와 인사말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지구촌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례6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각국의 영사를 초청하기

다문화학생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총영사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함께 배우고 한국어학급 학생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7

‘교실에서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실시하기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합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토요일에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지역주민들께서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례8

다양한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학생들이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학교 로비 또는 한국어학급이 위치해 있는 층)에 다양한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친구나라 국기를 게양하거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도 공간에 다문화 인식개선 작품, 다문화이해교육 활동 결과물 등을 게시합니다.

사례9

한국어학급 공간 활용하기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을 없애고,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학급의 이름을 ‘문화체험실’로 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오전 놀이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교실에 준비된 환경게시물을 통해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 공간을 활용해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② 상담 및 멘토링

사례1

‘찾아가는 상담교실’ 운영하기

한국어학급 학생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교실’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다문화 진로진학 학습 컨설팅단’ 교사 5명(진로상담교사)이 직접면담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교우관계 및 정서·심리 등의 내용으로 상담 하고, 학부모는 자녀지도 방법을 주로 상담합니다.

사례2

‘멘토-멘티’ 어울림의 날 운영하기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주제로 월 1회의 어울림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름표 달아주기(3월), 학교둘레길 걸어보기(4, 10월), 멘토-멘티 어울림 한마당(5월), 삼삼오오 짹을 지어 놀아요(6월), 멘토-멘티 편지주고받기(9월), 멘토-멘티 서로 격려해주기(11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둡니다.

사례3

또래멘토링 운영하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생활한국어에 익숙해질 시기에 학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움을 받을 멘티와 도움을 줄 멘토 모두 자율적 협력학습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입장인 멘토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통해 동기유발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래멘토링 프로그램은 또래언어를 습득하여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으면서도 집단 내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 이익의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연계

사례1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정방문 교사(정식 사업명칭 : 방문지도사)와 협력하여, 하교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은 언어발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적학급으로 완전 복급한 학생의 추수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합니다.

사례2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거환경 개선하기

결손가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와 지자체 복지과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다문화학생에게 가정환경이 개선된다면 한국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례3

대학병원에서 의료지원 받기

학교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치아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지역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의료봉사와 연계하여 난민가정 자녀가 수술 지원을 받습니다.

사례4

난민가정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하기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가정 학생에게 장학금(50만원)을 지급하는 ‘굿네이버스 난민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사례5**상호협력을 통한 오케스트라 운영하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하는 드림 오케스트라를 운영합니다. 학교는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재단은 지도강사 지원 및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의 각종 봉사활동 및 연주회에 참가합니다.

사례6**범죄 및 중독 예방 교육 실시하기**

지역 경찰청에 방문하여 거짓말 탐지기 등을 체험해보고,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교육을 통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례1

한국어학급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기

한국어학급 강사인 다문화언어강사와 한국어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중도입국·외국인학생들의 특성 및 맞춤형 지도 방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수용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학기에 1~2회 정도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강의 후 선생님들끼리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 지도 시 어려운 점을 공유하여 서로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례2

교사 동아리 및 멘토링 활용하기

교사 자율 독서 동아리를 통해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한 학기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한국어학급의 운영사례를 공유합니다. 또한 지역 내 한국어학급 담당 교원 간 멘토–멘티를 맺어 한국어학급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례3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교직원 연수 실시하기

교내 자율 연수를 분기별로 1회(1년 4회)씩 운영합니다.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학급 운영 안내, 지역 다문화교육의 현황,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한국사회의 다문화와 교육문제 등의 주제로 연수기회를 확대합니다.

사례4

원격 및 집합연수 과정 수강하기

정책학교를 운영하기에 앞서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다문화교육 관련 원격연수(중앙교육연수원–교육과정안내–과정명 ‘다문화’ 검색) 및 집합연수 이수합니다. 정책학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전 배경지식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PM 2021-7

2 · 0 · 2 ·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한국어학급(초·중등)

발행일자 | 2021년 2월

발행인 | 강대중 원장

발행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4

전화 : 02) 3780-9700

FAX : 02) 3780-9959

홈페이지 | www.nile.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edu4mc.or.kr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 · 0 · 2 · 1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한국어학급(초중등)